



IT기술 발전에 따른 저작권 이용계약과 해석

홈페이지 직접링크도 저작권 침해 판결 내려져 ...

김윤명 (cyberlaw@chollian.net)
오리진닷컴(orizine.net) 발행인

I. 서론

새로운 기술의 도입은 저작권 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 인쇄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의 보호에 대한 법제화가 이루어졌고, 방송기술의 도입에 따라 방송권, 영화기술의 발전에 따라 영화에 대한 권리, 사진기술의 발전에 따른 사진에 대한 권리,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전송권이 새로운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의 한 유형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렇듯 저작권법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유형의 권리를 정책적 견지에서 수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출현에 따라 법의 개정은 이루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런 기술의 발전은 이용자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의 이용 기회를 주고있지만 저작권자에게 또 다른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며, 단순히 인터넷상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사이트가 이용자에게는 새로운 접근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불법행위를 통한 정보서비스를 하고 있다면 권리자는 이용자의 접근가능성에 비례해 자신의 권리와 경제적인 이득을 잃어가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용자와 권리자의 권리가 디지털기술의 발전에 따라 완충점이 서로 벗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저작권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이용자로서 네티즌과의 관계도 있지만 이용자로서 저작권을 통한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문제될 수 있다. 특히 사업자로서 이용

자는 저작권자보다 경제적으로 우위에 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작권의 이용관계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저작권관련 분쟁에 있어서 많은 경우가 바로 저작권계약의 해석과 관련된 부분이 차지하는 것을 보면, 저작권계약이 불공정한 상태에서 이루어지거나 또는 예견되지 않은 기술의 도입에 따른 해석에 대한 문제로 대별된다고 하겠다.

II. 저작재산권 이용계약

1. 저작재산권 계약의 의의

광의의 계약은 사법상의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2인 이상의 당사자의 의사표시의 합치, 즉 합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 반면, 좁은 의미의 계약은 채권관계 내지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합의, 즉 채권 계약을 가리키는 것이다. 또한 계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의 기본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사적자치의 기저이기 때문에 강행법규의 위반이 아니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다. 따라서, 저작재산권 계약은 저작권의 이용에 관련된 계약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용(사용) 허락이나 최근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쉬링크랩(shrink wrap) 라이선스' 등 여러 가지 계약유형이 저작권과 관련돼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1) 저작재산권 양도

저작재산권 양도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그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 이

저작권 이용계약은 저작권의 이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구두 계약은 종이 한장 값보다 못하다는 서양속담에서 볼 수 있듯이 문서화되지 않은 계약은 계약의 성립이나 계약내용의 해석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계약은 문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작권계약도 마찬가지이다. 그러한 계약내용을 벗어난 이용행위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근거는 계약서밖에 없다. 따라서 합리적인 이용허락과 계약내용의 명확화를 위해서 계약서의 작성이 필요하며 또한 합리적인 해석론이 필요한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저작권계약의 해석과 적용에 대해서 고찰하고자 한다.

라고 한다. 따라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각각의 개별권리에 대해서도 양도가 가능하다. 또한 음반이나 컴퓨터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대여권도 인정하고 있다.

양도와 배포

저작재산권은 배포와 관련돼 권리소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책과 같이 유형의 저작물이 배포되면, 더 이상 당해 저작권자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즉,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특약이 없다면 저작권은 권리가 소진되기 때문에 양수자는 어떤 방식으로 이용하더라도 저작권법의 저촉은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배포권의 제한으로써 권리소진 원칙은 대여권을 저작권자에게 부여함으로써 배포를 금지할 권리를 유보시킨 것이 되었다.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유보

양도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은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와 별다른 계약을 맺지 않았다면 이 또한 저작권침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양도시에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을 유보한 것은 원저작물의 원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또한 동 규정의 당초 의도는 현상모집 등에 있어서 획일적인 형식과 일방적인 계약 약관에 의한 저작재산권의 양도를 생각한 것이라고 한다.

양도의 법적 성질

저작재산권 양도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타인에게 넘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세적 효력을 가지는 준물권 행위이고,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다만, 양도자체에는 특별한 방식이 필요없다.

장래 발생할 저작재산권의 양도

IT 등의 발전에 따라, 현재 예견치 못하는 기술 및 방법의 출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권리가 발생하게 될 때, 이때의 권리의 처분도 가능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장래 저작재산권이 발생하면 양수인에게 양도기로 약속하는 채권계약은 물론, 장래 저작권의 발생함과 동시에 저작재산권의 양수인에게 이전된다는 조건부 준물권계약도 유효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그런 특약이 없다면 계약당시의 기술과 사회적 타당성 등을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이지만 기본적으로는 저작권자에게 유보시키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2) 저작재산권 이용허락

이용허락의 의의

저작재산권은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허락은 저작재산권자의 이용승낙의 의사표시이며, 따라서 이용권은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다. 다시 말하면 이용허락은 저작권을 저작권자에게 유보되면서 단지 저작물의 사용권만을 주는 개념이다. 따라서, 저작물의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을 받은 이용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복제권, 공연권, 방송권, 전시권, 배포권, 전송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 각각의 개별권리에 대해서도 이용허락이 가능하다.

법적 성질

피허락자에게 주어진 이용권의 성질은 채권이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는 이용권자는 양수인에게 자기의 이용권을 주장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허락에 의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신뢰관계에 기초하고 있

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이용허락의 유형

이용허락의 경우에는 권리부여의 성질상, 통상실시권과 독점실시권으로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다. 즉, 전자는 저작권자는 물론 제3자에게 다시 이용허락을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저작권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라고 하겠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통상실시권은 이용자가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지 자신의 저작물 이용을 용인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제3자의 이용에 대해 계약상의 어떤 권리도 없는 입장이므로, 가사 제3자가 저작물의 무단이용을 했다고 해도 그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등을 할 수 없다. 그리고 독점실시권은 이용자가 침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지만 직접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채권자대위권을 통해 행사가 가능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해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행사할 수 있으며, 저작권과 같은 지적재산권의 경우에는 독점계약이 아닌 한 거의 인정되지 않은 것이 재판부의 입장이다.

3. 이용계약의 효력

1) 약관규제에관한법률상의 이용허락 계약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함)에서는 약관에 대해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약관은 사업자가 미리 일정한 종류의 거래에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약을 전제로 하지 않고 사전에 작성해놓은 계약의 초안으로서 구체적인 거래에 임하여 당사자 쌍방이 개별적으로 합의한 개별 약정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라고 하겠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는

는 안되며, 만약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이용자인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온라인상의 이용허락계약이나 click on license와 같은 신중계약을 통한 이용허락계약도 일종의 비전형 계약으로서 계약에 포함되며, 그 효력도 인정된다.

2) 홈페이지 및 링크의 사용허락

홈페이지의 콘텐츠도 인터넷이라는 개방된 공간에서의 정보이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묵시적인 이용허락의 범위에 포함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다. 그러나 저작권은 명시적으로 허락하지 않는 한 저작권자에게 권리가 유보되기 때문에 인터넷에 게시됐다고 해서 누구나 무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홈페이지에 게재된 콘텐츠의 이용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용허락을 얻어야 법률의 저촉 없이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링크에 대한 법률문제는 많은 논란이 있으며, 국내에서 직접 링크에 대한 저작권법적 문제에 대한 판결은 없었지만 링크를 통한 불법행위책임을 물으면서 ‘저작권침해와 같은 행위’로 법원은 판단했다.

3) 행정행위에 대한 저작권계약의 효력

이조실록사건에서 출판권 설정계약의 목적은 무형의 재산권인 출판권이고 저작물의 교부나 저작권 사용료의 지급은 위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아니므로, 실사물품의 교역 또는 법 소정의 협력사업에 해당돼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요하는 계약이고 통일원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 흠결이 있다하더라도 계약의 효력까지 부인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4) 매절계약

매절계약은 저작물의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서 지급하지 않고 한번에 미리 일괄 지급되는 모든 경우를 통칭한다. 매절이 계약되는 것은 문제가 없으나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즉, 법원은 매절의 형식으로 원고 일부를 넘겨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고료액이 인세상당액을 대폭 상회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됐다고 판단했으며, 또한 출판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저작물 이용대가를 판매부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일괄 지급하는 형태로서 소위 매절계약의 형태라 할 것으로 그 원고료도 일괄 지급한 대가가 인세를 훨씬 초과하는 고액이라는 등의 소명이 없는 한 이는 출판권설정계약 또는 독점적 출판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도 있다.

5) 위탁계약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의 법적 성질은 도급에 의한 계약이라고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위탁개발이라 함은 자본을 가진 자가 관련 지식을 가진 자로 하여금 저작물 등을 개발하도록 위탁해 개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관한 지적재산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하는 문제가 제기된다.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이나 저작권법상의 직무저작 또는 단체명의 저작물에 해당된다면 그런 법규정에 의해 해결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발명자 또는 창작자에게 특허받을 권리나 저작권이 귀속된다. 위탁개발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계약을 통해 결과물의 귀속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해 프로그램의 개발에 들어간 비용에 대한 적절한 비용이 지불됐다면 그 결과물은 위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런 계약이 없이 개발된 저작권의 귀속은 어떻게 되는가?

기본적으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창작자에게 저작권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 양도계약이 없었다면 수탁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은 저작자에게 저작권을 부여하는 저작권법의 기본원칙에 있어서 당연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만, 원시적으로 취득한다고 하더라도 위탁자에게 귀속되도록 합의한 경우에는 별 문제없이 양도되는 것으로 이해된다.

Ⅲ. 저작권 계약의 분쟁과 계약내용의 해석

1. 저작권 계약의 분쟁

실질적으로 저작권관련 분쟁에 있어서 다툼의 주된 내용은 저작권의 이용계약에 대한 부분이며, 이중에서도 계약의 범위에 대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계약당사자의 화해나 조정을 통해 일차적인 해결책을 찾게될 것이고, 이때에도 계약의 해석은 필요할 것이다.

대체적으로 민법상의 해석은 계약의 내용에 대한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대한 합치여부에 대한 주장대립의 해소에 있다. 저작권계약은 일반적으로 이용허락에 대한 권리 해석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

2. 저작권 계약의 해석

1) 저작권법과 민법과의 관계

일반적으로 저작권법은 민법의 특별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은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띤다. 민법과 저작권법이 국민의 재산권을 규율한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지지만 그 객체가 민법은 유체물에 있으며, 저작권법은 저작물이라는 무체물에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특별법은 일반법보다는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다. 저작권법에서는 그 권리관계나 이용허락, 제한 등에 대해 민법이 가지지 못하는 부분을 담고 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라고 하더라도, 그 특성상 모든 사항을 담을 수 없을 것이고, 일반법에서 다루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만 민법의 규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없기 때문에 더욱 특별한 대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라는 형식을 빌어서 다루는 것이라고 본다. 저작권법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는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민법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특히, 저작권법을 포함한 지적재산권법은 권리발생이라는 행정법적 측면이나 침해 등에 대한 소송부분을 제외하면, 이용과 관련된 계약부분이 많은 부분을 차지해 실체에 있어서 이용계약이 지적재산권의 실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즉, 특허발명의 실시허여계약이나 저작물이용허락계약, 상표사용허락계약 등에 관해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에 규정돼 있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해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2) 저작권 계약의 해석

일반 원칙

일반적으로 계약의 해석은 계약 당사자의 의사표시 및 행위의 전취지로부터 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행한 그대로의 계약은 언제나 충분히 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약의 해석이 필요하다. 만약 저작자와 이용자가 저작물 이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서의 문언 중에 구체적인 이용방법과 조건들을 개별적으로 명시했다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계약서의 문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이용자가 어느 범위에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고 볼것인지가 문제된다.

결국 어떤 계약에 대해 어떤 법률효과가 부여되는 지는 첫째, 우선적으로 당사자의 의사표시를 해석하고 둘째, 보충적으로 관습과 임의법규를 적용하며 셋째, 강행법규 및 사회질서에 위반하지 않는지를 검토해 판단해야 한다. 저작물 이용을 둘러싼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계약에 있어 해석상 의심스러운 경우에 일반 민법상의 계약해석 방법과 동일하게 민법 제106조와 제107조에 의해 해석하는가 아니면 일반 계약해석의 방법에서 더 나아가 저작권 계약에 있어서는 저작권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별도의 기준을 우선시하는 해석방법론을 받아들여 저작권계약에 있어서의 특수한 해석방법론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저작권계약 해석에 있어서 핵심적인 문제가 될 것이라고 한다.

저작권법이 추구하는 이념이 민법상의 이념과는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다만,

어디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의 차이에 있다고 본다. 따라서, 저작권계약의 해석에 있어서는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는 해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저작권법이 특별법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존재의 이유이다.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계약의 해석

새로운 매체의 등장은 저작권이용허락 계약시에 의도하지 않았던 사항으로서 새로운 매체가 계약 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저작권자와 이용자와의 계약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이런 해석부분은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이용허락계약의 해석문제로서 획일화된 결론을 내리는 것은 어려운 문제라고 본다. 다만 실제 사례를 고찰해 그 일반적인 판단기준을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용허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매체나 방법에 의한 이용허락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용허락의 제한적 해석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계약은 그리 중요한 이슈가 되지 못했지만, 최근 IT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저작권이 용 허락의 범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하면서 저작권 계약에 대한 많은 의식이 싹트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과 아울러 저작권을 통한 사업화에 있어서도 중요한 전환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리니지 사건에서 저작권계약과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저작권계약의 해석은 계약서에 담겨있는 내용을 기본적으로 해석해야겠지만 예견치 못한 IT기술의 도입에 따른 해석기준과 이용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 계약시기에 있어서의 기술적 요인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계약체결시에 예측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당초 계약의 이용허락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만, 이용허락을 하는 경우에 그 허용기간이나 허용하는 장소 또는 횟수 등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아무런 제한이 없다면 분리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과 장소 및 횟수로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IV. 저작권 계약 관련 판례

1. 드라마복제테이프 사건, VTR 복제판매와 관련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방송극작가로서 방송사업자인 피고 방송사에서 방영하기 위한 TV드라마 극복제작 의뢰를 받고 극본저작물을 피고 방송사에 제공했고, 피고 방송사는 위 극본을 토대로 TV드라마를 제작해 방영하는 한편 그 산하단체인 피고 방송사업단으로 하여금 위 드라마를 VTR테이프에 복사해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사용료도 별도 지급함이 없이 판매했다. 이에 원고들은 극본 저작물을 VTR테이프에 녹화해 이용하도록 허락한 바 없으므로 피고들이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이에 대해 방송사는 일체의 권리가 자사에 있다고 주장했다.

2) 판결요지

원고들은 극본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을 원시취득하며, 방송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저작한 극본을 피고 방송사에 제공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저작권자인 원고들이 피고 방송사에 저작물인 극본의 이용권을 설정해 준 데 불과할 뿐이므로 원고들은 극본저작권을 상실시키기로 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극본저작자인 원고는 극본에 대해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그리고 TV방송 이외에 VTR복제에 대해서는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으로서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허락이 없었기 때문에 극본 사용의 이용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3) 판례분석

방송을 위한 극본공급 계약서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작권은 여전히 방송 극작가에게 남아있고, 저작권을 양도받았다는 등의 사정을 이용자가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있고, 그 이용허락의 범위도 당연히 방송을 위한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고 있다. 본 판결은 이용허락의 범위에 관한 저작권 계약에서 일반 민법상의 계약해석 방법과는 다르게 저작권의 특수성을 고려해 저작권법의 해석에 있어 특수한 해석방법론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2. '당신은 안개였나요' 사건, CD기술과 관련해

1) 사실관계

원고들은 음반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와 1984. 4.경 음반제

작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원고 우용수가 작사하고, 원고 신정성이 작곡 및 편곡한 가요와 소외 방기남, 임선경, 김상배가 각 작사하고, 원고 신정성이 작곡 및 편곡한 가요들에 대한 원심 원고 이미배의 가창을 녹음한 원반(Master Tape)을 제작하고 이를 LP(Long Playing Record)음반(이하, LP음반이라 한다)으로 복제·판매한 사실, 그 후 피고 회사는 1992. 무렵부터 LP음반에 수록된 가요에 원심 원고 이미배가 가창한 소외 김기웅 작곡의 가요를 추가해 재편집한 원반을 제작한 다음 '이미배 전집, 당신은 안개였나요. 깊은밤 내리는 비는'이라는 제목의 CD(Compact Disc)로 복제해 판매해 오고 있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피고 회사로 하여금 원고들의 저작물에 대해 1회에 한해 이 사건 원반을 재편집함이 없이 LP음반으로 복제·판매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은 피고회사가 원반을 재편집해 CD로 복제, 판매함으로써 저작재산권과 동일성 유지권 등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 판결요지

본 계약의 성질

현행 저작권법은 제41조 제1항에서 '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제42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해 저작권 양도와 이용허락을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 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 이후 서라벌레코드사와 음반출판계약을 체결하고 다시 CD음반을 복제, 판매했음에도 피고가 이에 대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점, 원고들이 가수인

원심 원고 이미배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에서 대가를 지급받음 없이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지 가창, 작곡, 작사에 관한 저작권을 모두 피고에게 양도하려는 목적 하에 이 사건 계약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계약은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해석 기준

(가) 일반적으로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표시한 문언에 의해 그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그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그 법률행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나) 저작권에 관한 계약을 해석함에 있어 과연 그것이 저작권 양도계약인지 이용허락계약인지는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며,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해 해석함이 상당하다.

(다) 저작권에 관한 이용허락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저작권 이용허락을 받은 매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분쟁의 대상이 된 새로운 매체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을 누구에게 귀속시킬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것이므로, '녹음물 일체'에 관한 이용권을 허락하는 것으로 약정했을 뿐 새로운 매체에 관한 이용허락에 대한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경우 과연 당사자 사이에 새로운 매체에 관하여도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볼 것인지에 관한 의사해석의 원칙이 있다.

① 계약 당시 새로운 매체가 알려지지 아니한 경우인지 여부, 당사자가 계약의 구체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 경우인지 여부, 포괄적 이용허락에 비해 현저히 균형을 잃은 대가만을 지급받았다고 보여지는 경우로서 저작자의 보호와 공평의 견지에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예외조항을 명시하지 아니했다고 하여 그 책임을 저작자에게 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인지 여부 등 당사자의 새로운 매체에 대한 지식, 경험, 경제적 지위, 진정한 의사, 관행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이용허락계약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어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인지 여부, 이용을 허락 받은 자는 계약서에서 기술하고 있는 매체의 범위 내에 들어간다고 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어떤 사용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경우인지 여부 등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른 계약의 합리적이고 공평한 해석의 필요성을 참작해야 한다.

③ 새로운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이 기존의 매체를 통한 저작물의 이용

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만일 계약 당시 당사자들이 새로운 매체의 등장을 알았다더라면 당사자들이 다른 내용의 약정했으리라고 예상되는 경우인지 여부, 새로운 매체가 기존의 매체와 사용, 소비 방법에 있어 유사해 기존 매체 시장을 잠식, 대체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여서 이용자에게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허락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그와 달리 새로운 매체가 기술혁신을 통해 기존의 매체 시장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측면이 강한 경우여서 새로운 매체에 대한 이용권이 저작자에게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등 새로운 매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적절한 안배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해석해야 한다.

(라) 작사자, 작곡자 및 실연자와 음반제작사 사이의 음반제작계약을 비배타적 저작권 이용허락계약으로 해석하고, 음반제작계약시에는 상용화되지 않은 새로운 매체인 CD음반으로 제작·판매한 것이 이용허락 범위 내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이다.

3) 판례 분석

본 판결은 기술의 발전 및 계약에 따른 해석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라는데 의미를 가진다. 또한 저작권 양도 또는 이용허락 되었음이 외부적으로 표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저작자에게 권리가 유보된 것으로 유리하게 추정함이 상당하다. 계약내용이 불분명한 경우 구체적인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거래관행이나 당사자의 지식, 행동 등을 종합해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면서 저작권계약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의 인정에 있어서는 일반 민법상의 계약해석의 방법으로 돌아가서 저작권의 이용에 관한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또한 이용허락계약에서 명시적으로 제시되지 아니한 매체나 방법에 의한 이용허락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제시되지 아니한 매체나 방법에 의한 이용은 이용허락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저작권침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함으로써 계약해석에 대한 원칙을 세우는 듯 하

였으나, 결국 이런 원칙과 대치되는 내용의 판결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다.

3. Tasini v. New York Times 사건, 전자출판권과 관련해

1) 사실관계

미국의 전자작가연맹의 회장인 조나단 타시니와 10명의 프리랜서들은 <New York Times>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가 자신들의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고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 복제했다고 주장했다. 출판사와 작가들간의 계약에는 전자출판권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출판사인 피고는 자신의 출판에 대해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고, 작가들에게 보상을 하지 않고 이런 보존된 기록에 온라인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비용을 부과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2) 연방 지방법원

연방 제1심 법원은 저작권 침해책임에 대한 주장을 기각했다. 법원도 저작물이 처음 출판된 후 저작물이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출판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그러나 출판사가 저작물을 온라인상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각 저작물이 처음 출판됐던 집합저작물의 개정판에 해당하므로 출판사에게 승소판결을 내렸다.

미국 저작권법 제201(c)는 집합저작물의 저작자, 곧 본 사안에서의 출판사는 집합저작물을 개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다. 법원은 집합저작물의 창작자, 곧 본 사안에서의 출판사는 저작물이 처음 출판되었던 것과 동일한 매체에 저작물을 개정하는 것에 한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원저작물의 일정 측면이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존재하지 않지만 전자적인 데이터베이스는 출판사의 저작물과 매우 유사하다고 했다.

따라서, 전자출판은 법 제201(c)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다고 했다. 이런 판결결과에 따르면 작가들은 경제적인 이익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법원은 이 같은 손실이 온라인상의 출판이라는 현대의 기술적인 발전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론 인해 발생하는 예기치 않은 결과를 처리하기 위해 저작권법을 개정하는 것은 의회의 몫이라고 했다.

3) 제2순회항소법원

제2순회항소법원은 제1심 법원의 판결을 번복했다. 출판사가 저작물을 온라인상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작권법 제201(c)가 허용하는 개정에 관한 권리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즉, 출판사가 전자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저작물을 개별적으로 사용허락 할 권리가 저작권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요컨대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는 저작물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따라서 출판사는 집합저작물을 디지털 형태로 복제 또는 배포할 권리가 없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에서도 항소법원의 내용을 인용했다.

4) 판례분석

본 판결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의 기고문에 대한 디지털화에 대한 권리의 귀속여부라고 할 것이다. 사실관계에서와 같이 원고들은 당해 기고문에 대해서 아날로그 형태의 신문에 게재될 것을 염두해 기고한 것이기 때문에 피고자 자사의 사이트 등에 디지털화한 전자출판을 할 권리를 보유하지 못한 것이라는 점이다. 물론, 현재 모든 인쇄매체가 디지털화된 형태의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저작자의 권리인 이상 이런 권리를 침해한 신문사의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본다.

4. 전자지도 사건

프레임 링크와 관련해 나모웹에디터 프로그램을 와레즈 사이트에서 불법복제 할 수 있도록 한 사건에서 형사처벌이 내려진 경우는 있었지만, 지오테크놀러지 사건이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엄밀히 말하면 원고(지오테크놀러지)와 계약을 체결한 피고 넥스텔이 계약을 위반해 피고 신세기통신과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저작물을 이용하게 한 행위가 문제가 된 것이다.

재판부가 “피고 신세기통신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포함한 피고 넥스텔의 지도검색서비스 일체를 프레임 링크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 없이 이 사건 전자지도를 자신의 컴퓨터 서버에 복제해 이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에게 전송한 행위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전자지도의 저작권자로서 전자지도 등 데이터베이스 판매업을 영위하는 원고로 하여금 위 전자지도와 같은 데이터베이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입게 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해 타인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고 이로 인해 이익을 얻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법원은 “인터넷 정보서비스 제공자들이 자신들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인터넷 사이트의 인터넷 홈페이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링크하는 행위가 인터넷상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진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신세기통신이 원고의 허락 없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 사건 전자지도를 프레임 링크해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들로 하여금 피고 넥스텔의 컴퓨터 서버로부터 직접 전자지도를 전송받게 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판결은 계약위반에 대한 사항이지만 내용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과 같은 상당한 위법행위를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것이었다. 또한 재판부는 직접적으로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와 마찬가지로’ 선량한 풍속을 반하는 행위라고 판시함으로써 계약불이행 등에 대한 책임을 묻은 것이다.

V. 계약해석 수단으로서 목적양도론

1. 서언

저작권계약의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을 성문화한 입법례로는 독일 저작권법을 들 수 있다. 특히, ‘이용허락범위의 제한적 해석’이라는 원칙을 명문의 규정으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런 원칙들은 저작권계약의 특수성을 감안한 입법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저작권법에 있어서 기술중립성원칙을 견지한다면 앞으로의 예견되지 못한 기술의 도입과 또는 계약의 도입에 따른 저작권 이용계약의 원칙에 있어서 그 해석은 그 원 취지를 고려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해석되어야함은 자명하다. 따라서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에 대한 도입을 고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그런 내용과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저작권법 제41조 2항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대한 권리자의 유보 조항에 대한 부분이다. 동 조의 취지는 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권리자의 입장을 견지한 것이라고 보나, 일반적인 계약내용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입법을 통한 목적양도론의 도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2. 목적양도론의 고찰

1) 목적양도론의 의의

목적양도론이라 함은 저작권계약에 있어서 권리 부여의 범위에 관해 명시적인 합의가 되어있지 않는 한 그 범위는 당해 계약상 추구되는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독일 저작권법 제31조 4항은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방법에 관한 이용권 및 이를 위한 의무의 부여는 무효이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5항은 “이용권의 부여시 권리가 미치는 이용방법이 개별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

용권의 범위는 그 권리의 부여에 따르는 목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목적양도론의 구체적인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2) 목적양도론의 발전

독일에서의 목적양도론이 발전하게 된 것은 독일 저작권법이 저작권의 양도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의 이용허락관계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유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Goldbaum에 의한 목적양도론이 제창된 것은 영화화권의 문제와 관련있으며, 독일의 영화산업의 발전에 따른 소재의 빈곤에 따라 출판사는 소설의 출판만을 염두에 두어 권리양도를 받고, 영화화에 대한 가능성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문언에 근거하여 영화한 것에 대해 이익을 제기한 것에서 발단되었다. 이에 대해 라이히 법원은 1927.10.29 판결에서 최초로 목적양도론과 견해를 같이 해 당사자들의 의사에 합치에 의해 명시적으로 양도되지 않는 영화화를 위한 각색권이 양도되는 저작권에 포함시키는 것은 계약의 목적 및 상황에 비추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한 연방대법원은 1953.4.21 판결에서 라이히 법원에 의해 판례로 확인된 목적양도론에 동조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런 일련의 판결에 따라 독일저작권법의 개정을 통해 결국 입법화되기에 이르렀다.

3) 입법화 과정 및 구체적인 내용

이처럼 독일법제의 저작권 일원론에 기초된 사상적 배경으로 인해 저작권이용계약에 대한 해석론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고, 그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실무에서 목적양도론이 형성돼 왔다. 따라서, 1965.9.9 제정된 현행 저작권법에서 목적양도론을 수용한 입법이 이루어진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독일 저작권법은 이용허락범위의 제한적 해석의 원칙을 벗어나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허락계약의 조건이 저작물 이용에 따른 수익과 비교해 지나치게 적은 대가만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돼있는 중대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허락계약이

상대방, 즉 이용권자는 저작권자에 의한 계약조건 변경의 요청에 동의해 저작권자가 저작물 이용의 수익에 대하여 고정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에 관한 용익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저작물의 개작물의 공표 혹은 그 이용에 관한 동의가 저작자에게 유보되며, 복제에 관한 용익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저작물을 녹화할 혹은 녹음물에 복사하는 권리가 저작자에게 유보된다. 또한 저작자가 타인에게 저작물의 공개재현을 위한 용익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의심스러운 때에는 정해진 장소 외에서 화면, 확성기 혹은 이와 유사한 기술장치를 통해 위 재현물을 공개감지하도록 하는 권한이 위 타인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다.

장래의 저작물에 관한 계약에 있어서, 상세히 정해지지 아니하거나 오직 종류에 의해 정해지는 장래의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용익권을 부여하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은 서면에 의한 형식을 요하며, 계약 체결 후 5년이 지나면 양 당사자에 의해 해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장래 저작물의 용익권이 부여돼 있는 경우, 계약이 종료됨으로써 종료 당시 아직 인도돼 있지 아니하는 저작물에 관한 처분은 효력이 없음을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프랑스의 경우에는 저작권이용허락의 경우에 계약 체결일에 예견할 수 없었거나 예견되지 못했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조항은 이를 명시해야 하며 또한 그 이용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받는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다.

3. 도입에 대한 검토

독일 저작권법상의 목적양도론에 대한 규정들은 이용허락계약의 성질에 또는 계약의 공정성에 입각한 기본적인 해석원칙을 재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 하에서의 이용허락계약에서도 참고될 수 있는 해석원칙으로 보나, 우리나라보다 상황이 나은 일본에서도 대다수 학자와 판례의 입장은 독일의 저작권법상의 목적양도론에 도입을 반대한다고 한다.

학설의 도입과 이론의 도입은 그 시대적인 필요성에 의한 것임이 자명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독일법상의 목적양도이론의 필요성은 이용허락계약에 있어서 명확하지 못한 의사표시의 명확화를 위한 법정책적 견지에서 확립된 판례이론의 입법화라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판례가 많이 축적된 것은 아니지만 이용허락계약의 해석에 있어서 그런 견지를 법원에서 인정하고 있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또한 전반적으로 독일의 목적양도론의 도입에 대한 강한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한다. 따라서, 계약해석의 명확화라는 측면에 있어서, 또한 저작권법의 특별법적 역할을 위해서라도 목적양도론에 입각한 계약해석의 원칙은 필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좀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VI. 결론

1. 정리

저작권계약의 해석은 새로운 기술의 도입에 따른 범위의 특성에 대한 계약당사자간의 의사의 불합치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계약관계는 현재의 상황이 아닌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미래의 시점에 대해 시물레이션을 통해 그 가치평가가 선행된 후를 상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며, 예견치 못한 상황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 및 해석관계를 설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런 합리적인 해석을 위한 지침으로서 앞서 살펴본 '독일저작권법'의 규정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술은 우리가 현재 예견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은 법으로 포함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기술에 대한 중립성을 견지하는 입장에서 특정 기술을 법에 포함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결국, 독일법과 같은 저작권일원론의 체계와 저작권 양도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목적양도론이 발전해 왔다고 본다. 우리나라와 같이 양도가 허용되고 있고, 같은 대륙법계인 일본에서도 목적양도론에 대한 반대 입장이 있기 때문에 목적양도론의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저작권에 대한 해석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현행 저작권법 체계는 보다 다양한 기술 등의 발전에 따른 다양한 형태의 저작권 계약이 체결될 것이 예견되는 현재 상황에서 그 필요성을 검토하는 것도 의의가 있다고 본다.

특히, 컴퓨터프로그램과 같이 라이선스의 형태로 그 이용형태가 변형되고 있는 시점에서 더욱 이런 논의는 필요하다. 더군다나, 컴포넌트 소프트웨어의 유통에 있어서 그 목적과 이용허락의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더욱 명확한 이용관계의 설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우리나라의 저작권 법제에서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물론, 현행 법체계 하에서도 어느 정도 목적양도론에 입각한 입법이 이루어져있음을 지적하기도 한다. 또한 우리 판례에서도 이용허락범위의 제한적 해석을 통해 인정하고 있다고 본다.

2. 정보기술과 저작권법

현행 저작권법은 앞에서 언급한 바 있지만 과학기술의 도입에 따른 변화의 과정에 있다고 하겠다. 특허법이 기술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면, 저작권은 그 기술의 도입에 따른 법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다고 본다. 인쇄술, 방송·영화기술, CD, MP3, P2P, 인터넷 등은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른 저작권법의 변화를 유발시킨 기술이다.

법의 특징은 사회적 안정성을 꾀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회 패러다임이 안정화 된 후에 법률적 뒷받침을 위한 것이 주된 개정 이유였다고 본다. 그렇지만 정보기술은 그런 시간적 여유를 주지 못하고 있다. 당장, 인터넷상에서 유통되는 저작물이나 P2P사이트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쉽게 나서서 해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적재산권의 역사가 기술의 발전에 기인한 것은 물론이고 정책적인 측면에서 진보해 오고있는 것과 차이는 없지만 현재의 지적재산권정책은 그런 논의과정이 단순해지거나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기술의 발전에 따른 법적인 뒷받침이 어려운 현 상황 하에서 이해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런 점은 결과적으로 기술과 법의 괴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의 변화에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과 정보기술의 접목과 접근의 교감이 형성되어야 한다. 그렇기 위해서는 법적 측면에서 정보통신기술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기술적 측면에서도 왜 기술이 법적인 문제의 중심에 서게 되는지 알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국 법과 정책과 기술, 마지막으로 시장이 서로 타협하는 것이 지적재산권의 발전 방향이라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 郭潤道, 債權各論(新訂修正版), 博英社, 2001. | ·權五乘, 經濟法, 法文社, 1999. | ·박범석, 저작권계약의 해석방법론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朴益煥, 著作權 契約의 解釋에 關한 一考察, 저작권논문선집(II),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5. | ·송영석, 이상정, 저작권법개설(전정판), 세창출판사, 2000.
- 宋永植, 李相, 黃宗煥, 知的所有權法(下), 六法社, 2001. | ·吳承鐘, 李海完, 著作權法(改訂版), 博英社, 2000. | ·이대희, 영미의 디지털지적재산권 관련 판례평석,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0.
- 이상정, 저작물 이용형태의 변화에 따른 이용계약시 유의사항,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8. | ·이상정 외, 디지털 시대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의 국가전략적 의미, 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2.
- 이상정·오승중외, 멀티미디어콘텐츠,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등 신지식재산권의 보호방안 연구,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2002.
- 李聖昊, 著作物 利用許諾의 範圍와 새로운 媒體, 判例實務研究(1), 比較法實務研究會編, 1996. | ·丁相朝, 委託契約의 해석, 民事判例研究會編, 1996.
- 丁相朝, 著作隣接權, 知的財産權法講義, 弘文社, 1997. | ·丁相朝, 著作物 利用許諾의 範圍, 判例實務研究(1), 比較法實務研究會編, 1996.
- 丁相朝, 知的財産權法の 體系, 知的財産權法講義, 弘文社, 1997. | ·정상조, 컴퓨터프로그램의 공동개발, 통신망을 통한 컴퓨터프로그램 저작권 침해 및 음란물 유통에 대한 바람직한 규제방향, 한국정보법학회, 1999.
- 한국컴퓨터프로그램보호회, 지적재산권 용어 해설 조사연구, 1997. | ·許建成, 2000著作權法逐條解說(上), 저작권아카데미, 2000.
- 황적인, 저작권법과 민법과의 관계, 한국저작권논문선집(1),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1992. | ·黃漢式, 著作權契約 解釋의 基本方向, 判例實務研究(1), 比較法實務研究會編, 1996.